

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
-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하고(제3조)
-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(제4조)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도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시기)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① 공무원 일·숙직수당 기준 자율결정

<개선내용>

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